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692호

2021.7.6.(화)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1-1850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자치법규**[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850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규칙에 사무처장의 직급 및 직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무처장의 전문성 확보와 서울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무처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하되,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신설).
- 나. 그 밖에 조문 체계를 정비함(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전화: 02-2133-6633, FAX : 2133-0818, E-mail : miffie7 @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